

상정된 집단 소송 합의에 관한 통지문

수신인: 다음 조건에 부합하는 워싱턴 주의 현 18세 미만
위탁 아동 전원

1. 5회 이상 위탁 가정에 배치된 적이 있으며 지난 해 최소 1회 위탁 가정이 변경된 아동.(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2. 워싱턴 주 밖에 있는 아동 돌봄 시설에 위탁된 적이 있거나 위탁 상태인 아동.
3. 지난 6개월 사이에 숙박업소 또는 아동 위탁 기관의 사무실에서 체류한 적 있는 아동, 또는
4. 아동 장기 입원 환자 프로그램(Children's Long-Term Inpatient Program, CLIP)의 병상 배치를 기다리는 아동.

상기 언급된 아동 또는 언급된 아동을 보살피고 있는 경우,
이 통지 안내문을 숙독하여 주십시오.

Para acceder a una versión de este aviso traducida en *español*, visite <https://www.dcyf.wa.gov/ds-settlement-agreement>;

Để xem bản dịch thông báo này bằng *tiếng Việt*, vui lòng truy cập <https://www.dcyf.wa.gov/ds-settlement-agreement>;

សម្រាប់ការបកប្រែនូវសេចក្តីជូនដំណឹងនេះជា *ភាសាខ្មែរ*, សូមចូលមើល <https://www.dcyf.wa.gov/ds-settlement-agreement>; ສຳລັບການແປແຈ້ງການນີ້ເປັນ *ພາສາລາວ*, ກະລຸນາເຂົ້າເບິ່ງ <https://www.dcyf.wa.gov/ds-settlement-agreement>;

如需本通知的 *中文版*, 请访问 <https://www.dcyf.wa.gov/ds-settlement-agreement>;

Перевод этого уведомления на *русский язык* опубликован по адресу <https://www.dcyf.wa.gov/ds-settlement-agreement>;

*한국어*로 번역된 공지문은 <https://www.dcyf.wa.gov/ds-settlement-agreement> 를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ara sa pagsasalin ng notice na ito sa *Tagalog*, bumisita sa <https://www.dcyf.wa.gov/ds-settlement-agreement>;

በ *አማርኛ* ዘይቤ ማሳወቂያ ትርጉም ለማግኘት፣ እባክዎ <https://www.dcyf.wa.gov/ds-settlement-agreement> ይጎብኙ;

Si aad ogeysiiskan ugu hesho *Af-Soomaali*, fadlan booqo <https://www.dcyf.wa.gov/ds-settlement-agreement>.

귀하는 사건 번호 2:21-cv-00113, D.S. 외 대 워싱턴 주 아동, 청년, 가족부(Washington State Department of Children, Youth, and Families) 외 소송 사건의 "집단 소송 참가자"입니다. 본 소송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제기하였습니다. (1) Department of Children, Youth, and Families가 위탁 아동에게 필요한 수준의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2) 많은 위탁 아동이 지나치게 많이 이동해야 했거나, 숙박 시설에 체류해야 했거나, 워싱턴 주 밖의 시설이나 CLIP

시설에 배치됨.

본 소송 사건을 재판없이 종료할 수 있는 합의가 상정되었습니다. 귀하는 "집단 소송 참가자"이므로, 이에 귀하의 권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9월 7일, 워싱턴 서부 연방 지방 법원의 Barbara Rothstein 판사 주재로 공청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날 Rothstein 판사가 합의서의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Rothstein 판사는 제안된 합의서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적절한 경우에만 합의서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법원 공청회에 출석하여 판사에게 이 합의서에 대하여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해당 합의서의 승인을 반대한다면, "이의를 제기"하고 판사에게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의견 제시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청회 참가나 의견 제시는 의무가 아닙니다.

공청회 시간: 2022년 9월 7일, 오후 1시

장소: Courtroom 16A, Seattle Courthouse for the Western District of Washington, 700 Stewart St., Seattle, WA 98101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거나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의 안내를 따르십시오. Rothstein 판사에게 전화 또는 연락을 취하거나 법원 서기에게 연락해 제안된 합의서에 관해 질문하지 마십시오.****

본 소송의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집단 소송에서는 유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집단 소송인"이라 칭함)을 대표하여 일인 이상의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사건은 워싱턴 개정법 § 13.34에 종속된 절차에 따라 현재 또는 장래에 Washington State Department of Children, Youth, and Families에 배치되었거나 배치될 예정이며, 다음의 조건 중 하나에 부합하는 18세 미만 아동 전원 집단을 대표하여 제기되었습니다.

1. 5회 이상의 배치를 경험한 아동으로, 동시에 다음 둘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아동.
 - (a) 지난 해 최소 1회 이상 위탁 가정이 변경되었거나, (b) 공인 거주형 치료

프로그램(Qualified Residential Treatment Program, QRTP)에 지난 해 또는 그 이전에 배치된 적 있는 아동.

2. 워싱턴 주 밖에 있는 아동 돌봄 시설에 위탁된 적이 있거나 위탁 상태인 아동.
3. 지난 6개월 사이에 숙박시설 또는 아동 위탁 기관의 사무실에서 체류한 적 있는 아동, 또는
4. 아동 장기 입원 환자 프로그램(Children's Long-Term Inpatient Program, CLIP)의 병상 배치를 기다리는 아동.

워싱턴 장애인 권리 협회(Disability Rights Washington, DRW) 또한 단체로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집단 소송인 Disability Rights Washington은 함께 "원고"로 총칭합니다. 본 소송은 Washington State Department of Children, Youth, and Families와 그 장관을 대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들은 "피고" 또는 "DCYF"로 총칭합니다.

본 소송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본 소송에서는 DCYF가 집단 소송인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는 아동 위탁 서비스와 지원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위탁 아동이 직계가족 및 확대가족으로부터 과도하게 오랜 기간 떨어져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있는 동안, 위탁 아동은 다음과 같은 환경에서 지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워싱턴 주 밖의 아동 돌봄 시설,
- 위탁 가정에서의 반복적인 일박 체류, 및/또는
- 숙박시설/정부 기관에서의 체류.

원고는 이러한 관행이 집단 소송인에 포함된 아동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집단 소송인에 대한 아동의 권리 침해를 부인합니다. 본 소송은 DCYF로 하여금 이러한 침해를 시정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였습니다. 집단 소송 참가자는 그 누구도 "피해"에 따른 금전배상을 지급받지 않을 것입니다.

합의서는 어떤 효력을 가집니까?

원고와 피고는 재판에 들어가는 대신 협상을 통해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양 당사자는 Rothstein 판사에게 집단 소송인을 위해 합의서를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통지문은 합의서의 요약 내용입니다.

합의서는 DCYF의 서비스 개선 계획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개선 계획에는 워싱턴 주 밖으로의 배치, 숙박시설/기관 사무소 체류, 위탁 가정에서의 단기 체류에 대한 대안으로 트라우마를 충분히 고려하고, 문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성적소수자를 배려하는 다음과 같은 계획들이 포함됩니다.

성년기 진입 아동 주택 공급 프로그램: DCYF는 이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고 가족 단위의 환경보다는 독립적인 생활을 선호하는 위탁 양육 또는 위탁 양육 연장 보호 상태의 16~20세 사이의 청소년을 위한 다수의 주택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워싱턴 주 전체에서 시행할 것입니다.

전문 치료 위탁 양육자: DCYF는 발달장애 또는 행동장애를 가진 아동을 보살피는 데 전문적인 치료 위탁 양육자와의 계약 및 라이선스 부과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할 것입니다.

워싱턴 전역 대상 허브 홈 모델 프로그램: DCYF는 위탁 아동을 지원하는 위탁 가족, 확대 가족, 대안 가족을 위해 워싱턴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허브 홈 모델(Hub Home Model, HHM)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할 것입니다.

또한 DCYF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통해 더욱 성공적으로 아동을 배치할 수 있도록 실무 관행을 개선할 것입니다.

허가 기준의 개정: DCYF는 개별 청소년의 발달에 더욱 적합하고 필요를 유연하게 충족할 수 있도록 위탁 배치 허가 요건을 개정할 것입니다.

이해관계자의 참여: DCYF는 이러한 개선 작업에 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요청, 수집 및 보고하는 전문 퍼실리테이터를 고용할 것입니다.

친족 참여 유도 부서: DCYF는 친족 참여 유도 부서(Kinship Engagement Unit, KEU)를 워싱턴 전역에 설립할 계획입니다. 이 부서에는 가족이 안전하게 재결합하거나, 가족이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집단 소송 참가자의 확대 가족과 친구를 찾고 이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가족 찾기 프로그램이 포함될 것입니다.

위탁 및 이동: DCYF는 아동 및 청소년의 생활에 변동이 일어날 때 더 나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위탁 및 이동 프로토콜을 개발할 것입니다.

가족 집단 계획: DCYF는 아동과 가족의 선호와 결정을 더욱 잘 지원할 수 있도록 기관-가족 간 계획 공유 회의(Shared Planning Meeting, SPM), 가족 회의(Family Team Decision Meeting, FTDM) 정책, 실무 관행을 개정할 것입니다.

위탁 시설 배치: DCYF는 아동을 단체로 생활하는 위탁 시설에 배치하는 것이 적절하며 필요한 일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보다 종합적인 평가 절차를 수립할 것입니다.

시행 계획: DCYF는 약속한 내용을 어떻게 시행할 것이며 언제 새로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시행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이 시행 계획의 시안은 확정되기 전에 공개하여 의견을 경청할 예정입니다.

감시: DCYF가 본 합의서의 합의 내용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Kathleen Noonan이 감시인으로 임명될 것입니다. 감시인은 DCYF의 시행 계획을 검토하고, DCYF가 어떤 성과를 냈는지에 관해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검토하고, 합의 내용 이행에 있어서 DCYF가 어느 정도의 진척을 보였는지에 관한 공개 보고서를 매년 제출할 것입니다.

합의의 종료: DCYF는 합의한 변경 내용이 모두 달성되었다고 판사가 확정할 때까지 반드시 합의서의 내용을 이행해야 합니다. 합의 종료 결정 시, 판사는 다음의 여부 또한 고려합니다.

- 위탁되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요청한 적격 청소년 및 아동의 90%가 60일 이내에 서비스를 받았는지 여부.

- 숙박업소/사무실 체류 및 단기 위탁 가정 일박 체류가 근절되었는지 여부.
-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워싱턴 외부 아동 돌봄 시설로의 배치가 10 이하로 감소하였는지 여부.
- 배치 이력이 5회 이상인 아동의 수가 충분히 감소하였는지 여부.

본 소송은 금전배상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합의서에는 집단 소송 참가자에 대한 일체의 금전배상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직 상기 요약된 변경 사항만을 요구합니다.

또한 본 합의서는 피고로 하여금 원고의 변호사에게 변호 비용과 경비를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원고인 아동들에게 어떤 비용도 청구하지 않을 것이며 집단 소송 참가자들은 이 소송과 관련된 금전, 비용, 요금에 대해 어떠한 채무도 지지 않습니다. 당사자들은 현재 변호 비용과 경비를 협상 중입니다. 귀하는 2022년 8월 5일 이후 DRW 웹사이트

<https://www.disabilityrightswa.org/cases/d-s-v-washington-state-department-of-children-youth-and-families> 및/또는 미국 청소년 센터법(National Center for Youth Law) 웹사이트

<https://youthlaw.org/settlement-ds-v-washington-state-dcyf>에서 변호 비용과 경비와 관련된 원고의 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원고와 DCYF는 판사에게 재판을 진행하여 원고나 피고 일방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대신 본 합의서를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귀하에게는 이 합의서의 전체 내용을 검토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합의서의 복사본을 원한다면 아래의 안내를 따르거나 DRW 웹사이트 <https://www.disabilityrightswa.org/cases/d-s-v-washington-state-department-of-children-youth-and-families> 및/또는 미국 청소년 센터법(National Center for Youth Law) 웹사이트 <https://youthlaw.org/settlement-ds-v-washington-state-dcyf>를 방문하여 주십시오.

또한 귀하에게는 판사가 본 합의서의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합의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최종 승인 공청회에 참석 및/또는 증언하거나, 또는 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하는 방식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이러한 권리 행사 방법에 관한 안내입니다.

권리 행사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Disability Rights Washington에 법원에 공유할 의견 전달: 이메일, 편지 또는 전화를 통해 Disability Rights Washington(DRW)에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귀하의 의견을 고려하려면 2022년 8월 5일 이전에 의견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DRW로 의견을 제출할 때는 다음의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편: Disability Rights Washington, 315 5th Ave. S., Suite 850, Seattle, WA 98104

이메일: DSSettlement@dr-wa.org

전화: 206-324-1521 또는 1-800-562-2702

서신에는 반드시 서명을 해야 하며, 성함과 연락처 정보(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등)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DRW는 귀하의 의견이 전달되면 7일 이내에 판사와 DCYF 변호인에게 이를 공유할 것이며, 판사에게 2022년 8월 22일 또는 그 전까지 공유할 것입니다.

공정성 공청회 참석: 합의서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적절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공개 형식의 공청회가 개최될 것입니다. 공청회는 2022년 9월 7일 오후 1시에 700 Stewart Street, Seattle, WA 98101에 위치한 연방법원 Courtroom 16A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귀하는 공청회에 참가하여 발언함으로써 자신의 의견을 판사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공청회가 끝나면 법원은 합의 승인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청문회의 날짜, 시간, 장소가 변경되거나 청문회와 관련된 다른 정보가 변경된다면, 변경된 정보는 DRW 웹사이트 <https://www.disabilityrightswa.org/cases/d-s-v-washington-state-department-of-children-youth-and-families> 및/또는 미국 청소년 센터법 웹사이트 <https://youthlaw.org/settlement-ds-v-washington-state-dcyf>에 게재됩니다. 변경에 대한 추가적인 통지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판사가 예외를 허락하지 않는 한, 공청회 현장에서 또는 공청회 이전에 제기되지 않은 이의는 판사의 결정에 고려사항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면/질문이 있는 경우

합의서 복사본과 공청회 참석 방법 등의 기타 유용한 정보는 DRW 웹사이트 <https://www.disabilityrightswa.org/cases/d-s-v-washington-state-department-of-children-youth-and-families> 및/또는 미국 청소년 센터법 웹사이트 <https://youthlaw.org/settlement-ds-v-washington-state-dcyf>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의 방식을 통해 Disability Rights Washington으로 직접 연락하여 질문을 하거나 합의서 복사본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우편: Disability Rights Washington, 315 5th Ave. S., Seattle, WA 98104, 이메일 또는 전화: 1-800-562-2702, DSSettlement@dr-wa.org.

****Barbara Rothstein 판사 또는 법원 서기관에게 전화하지 마십시오.****

판사 또는 서기관은 소송이나 합의서에 관한 구체적인 질문에 대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700 Stewart Street, Seattle, WA 98101에 위치한 워싱턴 서부 미국 연방 지방 법원의 미국 서기관 사무국(Office of the Clerk of the U.S.)을 방문하여 지금까지 법원에 제출된 공개 자료를 검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서기관 사무국은 법원 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00~오후 4:00 사이에 개방됩니다. 또한 <https://pacer.uscourts.gov/>에 법원 전자 기록에 대한 공개 접근(Public Access to Court Electronic Records, Pacer) 시스템을 통해 유료로 본 사건에 대한 법원 소송일람표를 열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본 사건에 관한 공식 문서를 검토하려면 사건번호 2:21-cv-00113을 참조하십시오.